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4-11 호

제333회 동작구의회(임시회) 집회 철회 공고

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제333회 동작구의회(임시회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회 철회를 공고함.

1. 철회내용 : 제333회 동작구의회(임시회) 집회 공고
2. 철회사유 : 발의의원(6명) 철회 요구

2024년 3월 20일

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 이 미 연

